

행 정 명 령

**재난지역 선포 및 BRONX, DUTCHESS,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ULSTER,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카운티의 건강 법규 및 규정의 일시 중지 및 수정**

2015년 1월 26일부터 계속되는 극심한 겨울 폭풍이 뉴욕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Bronx, Dutchess,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Ulster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지역 내 중요한 대중교통, 급전시설, 공중보건, 공공 안전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블리자드와 같은 상황, 2피트가 넘는 적설량과 시속 65 마일의 광풍, 위험할 정도의 차가운 풍속 냉각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상 상황은 대규모 정전과 도로 폐쇄, 주택, 아파트, 상가, 공공 재산 및 민간 자산의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미하거나 심한 연안 침식을 야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최대한 뉴욕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최소한의 중단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법령 및 법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이 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임박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뉴욕 헌법과 행정법 2-B조 섹션 28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Bronx, Dutchess,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Ulster, Westchester 카운티 그리고 인접 지역들의 영토 경계 내를 2015년 1월 26일부터 주 재해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행정 명령은 2015년 2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나아가** 행정법 제 2-B조 제 29항에 따라 주의 종합 비상 사태 관리 계획을 이행을 지시하며, 2015년 1월 26일을 기하여 주 비상 사태 관리실 (the 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국토 안보 및 비상 사태부 (th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건부 (the Department of Health), 교통부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주 경찰국 (the State Police), 육해군부 (th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환경 보존부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the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공공 서비스 위원회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화재 예방 및 진압실 (the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 공원, 휴양지 및 역사 유물 보존실 (th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일반 서비스실 (the Office of General Services), 뉴욕주립대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Thruway 당국 (the Thruway Authority),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및 기타 필요한 주 정부 기관들과 미국 적십자사 (the American Red Cross)에 이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작업을 통해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지역의 지방 정부 및 주민들을 돕고,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다른 도움을 제공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선포는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정(FMCSR)의 Part 390 - 399의 구호 활동을 규정하는 49 C.F.R. §390.23(a)(1)(A)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제설 관계자들이 중요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공공 전력 복구반이 뉴욕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FMCSR의 구조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은 Jerome M. Melville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 장관대행을 이 사건의 뉴욕주 협조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

CUOMO 뉴욕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법령,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조의 29-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 정지합니다:

정신건강법 제3320조의 하위항목 (2) 및 관련 법규, 병원, 요양원, 보호시설 디스펜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가 시설로 하여금 환자 특정 기록 관리 및 다이버전 예방관례를 유지하면서 보건청장이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재난 비상상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조제되는 관리 물질을 일시적으로 승인, 보관 및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정신건강법 제3333조의 하위항목 (1)과 제3338조의 하위항목 (2) 및 관련 법규, 인가 받은 약사가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처방전에 합법적인 재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 재난 비상사태로 처방약 또는 이전에 조제 받은 관리 약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관리 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정신건강법 제3332조의 하위항목 (3), 제3333조의 하위항목 (1), 제3339조의 하위항목 (3) 및 관련 법규, 환자의 조제 약물이 비상 재해로 인해 파손, 사용 불가능 또는 접근 불가능한 경우 이전에 조제 받은 약품이 소진된 날로부터 7일 이상에 인가 받은 의사가 관리 약물을 처방하고 인가 받은 약사가 이를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교육법 제6810조의 하위항목(2)(a) 및 관련 법규, 인가 받은 약사가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처방전에 합법적인 재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 재난 비상사태로 이전에 조제 받은 비-관리 약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비-관리 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 Title 10의 제400.9조 및 제405.9조의 하위항목 (f) (7), 건강법 제28조 ("제28조 시설")에 따라 인가된 곳으로 재난 비상사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과 요양원이 안전한 이송 및 퇴원 방침을 포함해 모든 환자와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타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법 (42 U.S.C. § 1395dd)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한 경우 이들 시설에게 보건청장이 승인한 대로 환자를 신속하게 퇴원, 이송 또는 수용하는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0.11조, 재난 비상사태로 인해 기타 제28조 시설에서 철수하는 환자를 수용하는 제28조 시설에게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환자 검사 장비를 작성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0.12조,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건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28조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2조의 하위항목 (e),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이 적절한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3조의 하위항목 (b),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이 건강청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유자격 자원봉사자 또는 타 병원 소속의 관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4조의 하위항목 (b) (6),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이 전문의 수련의와 내과전문의가 구체적인 시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4조의 하위항목 (e) (1)과 제707.3조의 하위항목 (b),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에서 의사가 최대 10명의 의사 보조자들 및 등록된 전문 보조자들을 감독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9조의 하위항목 (b) (12), 재난 비상사태로 폐쇄된 제28조 시설에서 이송된 환자를 받는 일반병원이 해당 환자 입원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환자의 건강 기록 및 신체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19조의 하위항목 (d),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병원이 응급실의 직원의 수를 필요한 만큼 충원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05.28조의 하위항목 (a),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는 일반병원이 해당 환자의 입원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사회복지 검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대피 전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환자에게 해당 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15.11조,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이 사람을 입실시킨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해당 요양원으로 임시 대피한 이 사람의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대피 전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해당 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15.15조의 하위항목 (b),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이 사람을 입실시킨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의사의 입실 허가서를 얻거나 또는 대피 전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해당 허가서를 먼저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415.26조의 하위항목 (i),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이 사람을 입실시킨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실 절차를 준수하거나 또는 대피 전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해당 절차를 먼저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763.4조의 하위항목 (h) (7)과 제766.5조의 하위항목 (d) (1),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돌보는 인가된 가정건강기관(home health agencies), 장기 가정의료 프로그램, AIDS 가정 간병 프로그램, 인가된 가정간병서비스기관이 초기 서비스 방문 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가정건강도우미 및 개인간병도우미의 가정내 감독 활동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의 Title 10의 제763.5조의 하위항목 (a),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돌보는 인가된 가정건강기관, 장기 가정의료 프로그램 및 AIDS 가정간병 프로그램을 위해 초기 환자 방문이 커뮤니티 추천서의 수령 및 승인 후 또는 기관 배치 후 다시 집으로 복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NYCRR Title 18의 제505.14조의 하위항목 (b) (5) (ix)와 제505.28조의 하위항목 (f),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돌봄 및 소비자 중심의 개인지원프로그램 서비스의

재인증을 위해 추가 30일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이 때, 서비스 허가 기간은 행정명령에 따라 선포된 재난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종료됩니다

NYCRR Title 18의 제505.14조의 하위항목 (e) (2) (ii),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돌보는 개인간병요원의 교육을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이 때 이 교육은 해당 요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선포된 재난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실시해야 합니다.

NYCRR의 Title 18의 제505.14조의 하위항목 (f) (3), 재난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개인간병 서비스를 위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영양감독방문이 실시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이것은 Albany 시에서의 본인의 권한과 뉴욕주의

Privy Seal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상기와 같이 지정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